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한 정 미



비교법제 연구 13-20-⑩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한 정 미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A Study on the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of Small Business in the EU

연구자 : 한정미(연구위원)
Han, Joung-Mee

2013. 10. 18.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에게 ‘패자부활’이란 실패 후의 재도전 즉, 파산절차의 진행, 회생,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EU 각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산 관련 법률의 개정예 주목하고 있음
 - EU에서 기업의 50%는 창업 후 5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가 파절절차를 거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비율이 회원국별로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및 규정, 재도전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II. 주요 내용

□ EU SBA의 패자부활 관련 원칙

- EU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음
- SBA의 제1원칙인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제2원칙인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제4원칙인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가 패자부활 관련 원칙에 해당

□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 EU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산과 재도전(Bankruptcy and Second Chance)” 프로젝트를 수행함
- ‘파산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과정으로 도산기업을 지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기업가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가’를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으로 함
- ① 예방(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메커니즘), ② 법정 밖에서 협의(조정), ③ 법원 안의 흐름(절차), ④ 파산이후 기업재건과 재도전을 위한 조건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EU 도산규정의 개정

-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EU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이하 ‘도산규정’이라 한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개정함
- 개정된 도산규정의 큰 특징은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사항을 국가별 파산법으로 수용하도록 한 것임
- 고의로 파산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채무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Ⅲ. 시사점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선

-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 또는 ‘법’이라 함)」은 회생기업의 종류나,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구성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회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 EU의 SBA의 원칙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회생절차(Fast Track)의 운영, 회생컨설팅의 확대, 전문가 조력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EU의 경우와 같이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재도전을 위한 기업정리 기간의 단축, 행정지원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파산절차 및 채무면제절차의 운영이 필요함

▶▶ 주제어 : 재도전 기업, 고의성 없는 채무자, 도산법, 중소기업 희생, 채무면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Resuscitation Program for failed SMEs refers to the entire process of giving another chance challenge to SMEs after failure, i. e., application for bankruptcy, resuscitation, and re-startup.
- EU member countries are examining the need for amendment of their bankruptcy-related laws in an effort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on businesses and consumers.
- Half of businesses in EU member countries fail to stay afloat for more than 5 years. An average of 15% commence bankruptcy procedures.
- Compared to the pre-financial crisis in 2008, the percentage of businesses going bankrupt is increasing to a considerable extent in EU member countries.

II .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 We have come up with suggestions on laws concerning the Resuscitation Program to be adopted in the country by reviewing

the policies, regulations, and chance challenge programs adop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 The EU enacted the Small Business Act (SBA) to provide failed SMEs with another chance challenge.
- The Resuscitation Program reflects the following principles contained in SBA: 1. An environment shall be fostered wherein entrepreneurs and family businesses can do well and the entrepreneurial spirit can be rewarded; 2. Honest business people going bankrupt shall be given another chance challenge; 3. Public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ready to listen to the demands of SMEs.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Project

- Between 2008 and 2010, the EU implemented the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Project.
- The following was set as the purpose of the Project: to create more businesses and jobs by prevent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from being eroded by bankruptcy, and; to help honest businesses get out of debt by providing support for them.
- Review was conducted for the following areas: 1. Prevention (early warning system; support mechanism); 2. Out-of-court settlement (composition); 3. In-court flow (bankruptcy procedure), and; 4. Conditions for resuscitation and another chance challenge after bankruptcy

EU's amendment to the insolvency proceedings

- 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the insolvency proceedings (Insolvency Proceeding Regulation), which was enacted in 2000, was amended in December 2012 due to the need for a modernized, developed version.
-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amended Insolvency Proceeding Regulation was that it requires each member country to adopt the amendment as its bankruptcy law focusing on the resuscitation of businesses rather than their bankruptcy itself.
- That is because giving honest debtors another chance challenge and writing off their individual debts help create more businesses and jobs.

III. Implications

Improvement of resuscitation procedure for SMEs

- The country'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said to stipulate a single-channel resuscitation procedure that applies equally to SMEs and their larger counterparts regardless of type of business, amount of debt, or composition of interested parties.
-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mproving the relevant system by providing SMEs with another chance challenge, operating a fast-tracked resuscitation procedure for SMEs, and expanding resuscitation consulting and experts' advice, like what the EU's SBA does.

□ Provision of support for SMEs taking another chance challenge

-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 for SMEs taking another chance challenge, shorten the period for business reorganization for another chance challenge,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m, like what the EU does.
- The operation of a separate bankruptcy procedure and a debt write-off procedure for honest debtors is required.

▶▶ Key word : insolvency proceedings, bankruptcy, Second Chance Project, Small Business Act, re-startup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 2 장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17
제 1 절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17
I. 파산현황 및 특징	17
II.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18
제 2 절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20
I. SBA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현	20
II. 재도전지원에 관한 원칙	21
제 3 절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23
I. 프로젝트 수행의 배경	23
II. 재도전 프로젝트 개관	24
III. 재도전의 기회에 대한 공공정책 체제	29
제 4 절 EU 도산규정	30
I. EU 도산규정의 개정과 의미	30

II. 2012년 개정 도산규정의 주요내용	32
III. 도산규정에 대한 평가	39
제 3 장 패자부활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43
제 1 절 서 설	43
제 2 절 채도전지원 제도의 개선	45
I. 고의성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운영	45
II. 채도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	47
제 3 절 회생제도의 개선	49
I. 신속회생절차의 운영	49
II. 회생컨설팅의 확대	52
III. 관리인 제도의 개선	58
IV.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의 개선	62
제 4 장 결 론	65
참 고 문 헌	6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소기업에게 ‘패자부활’이란 실패 후의 재도전 즉, 파산절차의 진행, 회생,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수립된 신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이 제시되고 있다. 이 국정과제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설명되고 있다.¹⁾ 이 국정과제 또한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제시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부실 중소기업이 그 기업지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을 하여야 할 것인지, 청산을 전제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지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져 퇴출과 신규 진입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기업의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에 관해 주목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심각하게 겪었던 미국은 Start-up 관련 법제를 제정하는 등 창업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영향을 입은 EU 각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미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파산관련 법률의 변화는 기업부실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신용불량이나 과잉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다.

1)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1.php>) 참조.

또한,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EU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이하 ‘도산규정’이라 한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개정하였다.

현재의 실패가 장래의 성공을 위한 거름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실패가 단순히 폐업으로 종료된다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업실패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폐업 후 그들의 실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여전히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에도 파산 후의 오명과 차별에 따른 고충을 겪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파산을 두려워하여 아예 창업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패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이고,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긴 기업이 살아남고 실패한 기업이 퇴출되는 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²⁾ 이러한 체제에서 패자에게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에 대하여 선진적인 입법사례로 꼽히는 SBA의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에 관한 사항 및 2012년 개정 EU ‘도산규정’의 파산 중소기업 재도전절차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7면.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과 “파산과 채도전 프로젝트”, ‘도산규정’의 개정 이유 및 개정규정의 특징분석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패자부활제도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이라 한다)」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한다.

문헌자료로는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도산규정’ 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의 최종보고서 등을 주된 검토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도산관련 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회생 파산사건의 효율적 관리방안 파산부 법관 워크숍” 자료를 활용하였다.

SBA와 ‘도산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및 집행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구체적인 입법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EU에서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을 정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학계 전문가의 개별자문 및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내용의 공유 및 검증을 위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을 거친 바 있으며,³⁾ 이 보고서에 발표의 내용과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2013. 7. 24.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창조경제와 창업·기술혁신 규제개선’에서 “중소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David Linton(Senior Counsel, CJ E&M)의 지정토론과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백두옥(창업진흥원장), 이중화(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장), 한영수(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의 종합토론을 거친 바 있다.

제 2 장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제 1 절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I. 파산현황 및 특징

EU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폐업원인 중 파산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70만개 가량의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 연평균 2백 8십만 개의 일자리가 이와 관련 되어 있다.⁴⁾

이들 중소기업이 EU 국가들에서 창업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고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유럽의 경제생활에 내재 된 자연적인 과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U에서 기업의 50%는 창업 후 5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가 파절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⁵⁾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 폐업 관련 수치를 보면, 2009년에 46%로 증가한 후, 2010년 5%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증가의 최고점을 기록하고 2009년에는 그 파산 전체에서 스페인(+187%), 아일랜드(+113%), 포르투갈과 덴마크(+67%), 이탈리아(+45%), 영국(+3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부실지수가 2009년에 22% 증가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2009년에 유럽에서 파산 관련 실직자의 총 수는 17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⁶⁾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20만개 이상의 기업이 매년 EU에서 파산하였고, 매년 170만개의 실업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Overcoming the stigma of business failure - for a second chance policy - Implementing the Lisbon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COM(2007) 584 final, 5.10.2007.

5)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2012, p. 84.

6)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p. 3.

한편, EU에서의 파산은 국제파산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략 5백만 유럽 기업들의 고객이나 채권자 또는 사업파트너들은 다른 회원국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은 파산발생시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각 국 도산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대략 5만개의 기업이 채무자로 전락하고 적어도 10만개의 기업은 국제도산에서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국제파산은 대기업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국제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파산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20%가 해외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두고 있는데,⁸⁾ 전체 EU에 이천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 중 해외 자회사나 합작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백만 개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파산은 유럽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기업의 0.2%에 해당하지만 EU에서 30%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AV)의 41%를 담당하기 때문이다.⁹⁾

대기업은 또한 해외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파산은 상당한 연쇄효과(knock-o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II.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파산과 패자부활(재도전지원)은 단순히 개별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의 과소 문제로 볼 것이 아니

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4.

8) 대조적으로 EU의 중소기업은 5%가 해외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new European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2012. 12. 12, p. 2.

9)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4.

라, EU 전체 경제적 기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즉, 파산기업의 효과적인 처리는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럽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파산과 개인파산이 구분되지 못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적 특징을 드러내는 사항을 보면 기업에 관한 파산법이 개인파산 법률에서 발전된 부분으로 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파산관련 법률은 처음에는 자연인의 파산에 대한 내용을 기업의 부실 부분에 유추적용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상인과 비상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업, 개인회사 등을 포함하는 상인은 기업에 관한 파산제도 하에서, 소비자 등을 포함하는 비상인은 구분된 파산제도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¹⁰⁾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에 관한 파산법률과 기업에 관한 파산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구분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회사의 부실 판단기준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국가에서 기업의 상당수는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결제의 부담(부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회사 주주의 개인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파산이 개인의 파산과 얽히게 되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실화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²⁾ 따라서 중소기업

10) Catherine Bridge, "Insolvency-a second chance?", Law in transition 2013, p.32.

11) *Ibid*, p. 33.

12) 이에 관한 상세는 Koide Atsushi,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경영자의 보증",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국제공동학술대회, 2013. 10. 18, 77면 이하 참조.

패자부활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는 것은 결국 개인의 파산을 예방하는 것이 되며, 전체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I. SBA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현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의 제정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SBA는 리스본 아젠다¹³⁾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법적, 재정적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2008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것이다.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으며,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되었고,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하였다.¹⁴⁾

13) 2000년 리스본에서 열린 EU 이사회는 “2010년까지 EU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로 명명된 이 정책은 경쟁력과 고용,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3개의 “황금축(golden triangle)”을 달성함으로써 유럽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보다 현대화된 유럽형 사회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 중소기업헌장(European Charter for Small Business)’은 리스본 아젠다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이노베이션, 고용창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정책에 지침을 주고 있다. 이 헌장에서는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원칙(Principles) 부문에서 제시한데 이어 실행지침(Lines of action)으로서 “① 창업교육 및 훈련, ② 쉽고 빠른 창업, ③ 창업지향적으로 규제 완화, ④ 기술 훈련 및 평생교육 지원, 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개선, ⑥ 통신, 유틸리티,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시장 창출, ⑦ 조세, 금융 시스템 개선, ⑧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⑨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제시하였다.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7. 31, 13-14면.

14) 한정미, 앞의 보고서, 14면.

SBA는 제안서에서 유럽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인지하기 위한 EU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리고 EU와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해 “Act(법)”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⁵⁾

그러나 기존에 EU에서 발표되었던 제안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SBA의 발표는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게 EU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의 입법지침으로써 SBA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¹⁶⁾ SBA는 국제법상 연성법(軟性法, soft-law)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⁷⁾¹⁸⁾

II. 재도전지원에 관한 원칙

EU에서 실패의 낙인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례로는 유럽사회에서 파산 후 재창업자의 사업 잠재력이 저평가되고 있으며, 유럽인의 47%가 과거 실패했던 업체에서 주문하기를 피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편, 재도전의 절차에 있어서도 재도전 이전의 긴 파산 절차로 인한 복잡성과 행정지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파산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개월에서 9년까지 다

1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ink Small First”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5.6.2008 COM(2008) 394 final, p. 4. 한정미, 앞의 보고서, 25면 재인용.

16)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clusions on the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3094th COMPETITIVENESS(Internal Market, Industry, Research and Space) Council Meeting Brussels (May 30, 2011), p. 2, para 1 & p. 3, para. 5. available at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intm/122326.pdf.

17) 집행위원회가 발행하는 Communication을 연성법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Linda Senden, Soft Law in European Community Law, 2004, p. 24 & p. 119-120 참조.

18) 한정미, 앞의 보고서, 25면.

양하다.¹⁹⁾ 따라서 SBA에서는 고의성이 없이 파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조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EU 집행위원회의 보고²⁰⁾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실패했던 기업가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¹⁾ 이를 기반으로 한, SBA에서는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재도전의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SBA 10가지 원칙 중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제1원칙은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유럽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사업양도를 원활히 하기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²²⁾

다음으로 제2원칙인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이 신속하게 재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국 가운데 기업에게 새로운 시작을 촉진하도록 하여 1년 이내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신생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²³⁾

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Ibid., p. 7.

20) 사업실패에 따른 낙인의 극복(Overcoming the stigma of business failure - for a seconde chance policy: implementing the Lisbon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을 말한다.

21)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 16.

22) 이와 관련한 상제는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10306/09(Press 155) - Press Release, 2945th Council meeting, Competitiveness, COM, 2009. 참조.

23)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16.

마지막으로 제4원칙인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는 것이 SBA에서 중소기업 재도전지원 관련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보면, EU와 회원국들은 전자정부와 원스톱 솔루션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한 간소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사업면허 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²⁴⁾

이와 같은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에 관한 SBA의 원칙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제2원칙이라 할 것이다.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는 원칙을 통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모범사례를 교환하여 재도전 기회에 관한 정책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출발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파산(non-fraudulent bankruptcy)의 경우, 1년 이내에 사업의 청산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였으며, 재도전업자들에 대하여 신규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²⁵⁾

제 3 절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I. 프로젝트 수행의 배경

SBA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EU는 회원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EEA)²⁶⁾ 국가들 및 후보 국가들에게 “파산과 재도전(Bankruptcy

24) 한정미, 앞의 보고서, 34면.

25) European Commission, *Ibid*, p.17.

26) EU의 EEA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정책에 관한 공통수용 등의 목적

and Second Chance)”에 관한 2년간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다.²⁷⁾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EU의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국의 전문가들은 파산과 재도전 기회에 관련된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사례와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파산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과정으로 도산기업을 지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기업가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가’에 있었다.²⁸⁾ 이를 위해서 파산과 재도전의 각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관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기업의 역동성(Business Dynamics)”에 관한 독립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그룹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II. 재도전 프로젝트 개관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²⁹⁾를 보면,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도산과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³⁰⁾ 이 프로젝트에서는 창업한 회사는 창업 이후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운영하는 동안 상당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절한 시기의 재건지원을 통해 다시 회생하거나, 그렇지 않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33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http://www.eea.europa.eu/about-us>)

27) Croatia, Iceland Montenegro, Norway, Serbia 및 Turkey와 모든 EU 회원국들은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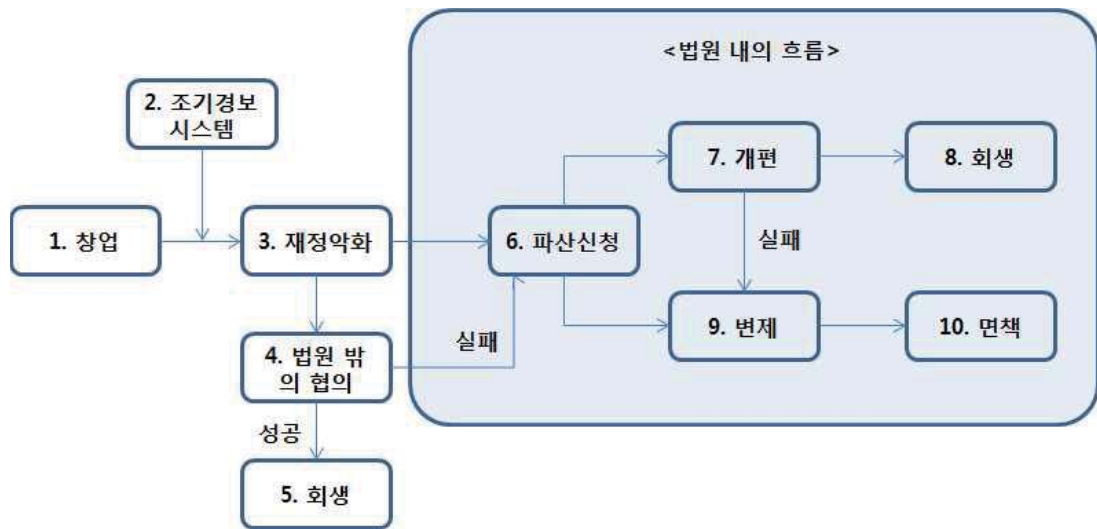
28)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p. 5.

29)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보고서를 말한다.

30) 아래에서 설명하는 예방, 법원 밖의 협의, 법원 내의 절차, 재도전을 위한 파산 후 기업가에 대한 치료의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동 보고서 6-11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을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전제로 ① 예방(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메커니즘), ② 법정 밖에서 협의(조정), ③ 법원 안의 흐름(절차), ④ 파산이후 기업재건과 재도전을 위한 조건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³¹⁾

<그림 - 1> 도산절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2011. 1, p. 6.

1. 예 방

기업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영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파산하여 기업의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보다 계속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 즉,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도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예컨대, 부실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사전적인 예방을 하도록

31)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Ibid*, p. 6.

하는 것과 효율적인 파산 및 지급 불능시스템을 갖추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2. 법원 밖의 협의

기업은 기업의 수명 동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 발생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구조조정 기간 동안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또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정 밖에서 협의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법원 밖에서의 협의는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며,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참여하는 기업의 초기 거부감을 극복하는 문제와 특히 관련이 있다.

법원 밖에서 조속한 금융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해당 기업이 기업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기업가가 직접 사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한편, 채권자와 타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법원 밖에서의 협의절차에서 인식해야하는 중요사항을 보면, ① 법원 밖에서의 협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한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법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써, 법원 밖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채용자를 쉽게 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큰 지원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③ 법원 밖에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

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공개 입찰 및 공적자금 채용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법원 내의 절차

법원 밖의 협의를 성공하지 못한 기업은 정식 재판절차를 법원 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로 작용하게 되고,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부채 일부의 면제 허용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파산법의 효율성 수준은 고용비율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지원이 필수적이며, 신용시스템은 보안 및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채권자 권리와 채무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고 정리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파산절차가 채무자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관리자가 임명 되어야 하며, 파산기업에 대한 분석은 가치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법원의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절차는 빠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잠재적 채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편,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단순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입법자들이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선호하여 법원의 절차를 주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전조치 의정서의 도입을 고려하는 아일랜드와 같이, 파산신청을 채무자가 하기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가정산이나, 자발적 채무관리 계획을 협상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법원의 파산절차 진행을 최후의 선택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4. 재도전을 위한 파산 후 기업가에 대한 치료

최근 점차 많은 국가에서 파산을 기업의 경험(학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직하게 경영하였으나 부도를 하게 된 경우에도 실패한 기업가에게 부정직한 기업이라는 낙인을 가지게 하는 것은 채무상환의 부담이 오히려 길어지게 되거나 새로운 시작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회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재도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³²⁾

한편, 기업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금융기관이 개인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새로운 기업의 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실패의 대부분은 기업가의 무능력이 아니라 외부환경으로 인한 것이지만 입법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내거나, 기업의 실패와 개인의 실패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고의로 파산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압력에서부터 보호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도전라는 개념이 국가의 법령에서는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의로 파산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그렇지 않은 파산과 구분하는 것은 파산자체의 오명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과정에서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의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함께

32)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SME Policy Index : Eastern Partner Countries 2012, p.87. <http://dx.doi.org/10.1787/9789264178847-en>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무시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인 기업에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부과하면서도 보장해 주는 역효과와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모든 과정은 실패와 관련된 오명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영업 중인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 중 금융지원은 재도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재도전하는 기업은 그에 적합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의한 긴 상환기간과는 별도의 자금제공, 신용제공이 필요하다.

결국 고의로 파산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구별은 재도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수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불공정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재도전의 기회에 대한 공공정책 체제

재도전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① 고의로 파산하지 않은 기업가가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② 채무면제절차와 ③ 빠른 채무해결을 지원하는 역할도 공공정책에 해당한다.

기업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잠재적인 우수한 인력의 선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원정책과 대상에게 재도전 기회에 관한 정책을 제공하여야 한다.³³⁾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파산책임의 경감을 위해 국가(공권력)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에 대한 33개국의 전문가 그룹의 권장사항을 포

33) OECD, *Ibid*, p.87.

함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상황과 예측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구제하고 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파산(도산)의 과정에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들로 하여금 독자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구제하고 더 많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³⁴⁾

제 4 절 EU 도산규정

I. EU 도산규정의 개정과 의미

1. 개정배경 및 절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U에서는 매년 평균 20만개의 기업이 파산하였고, 이로 인해 170만의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파산 가운데 약 4분의 1은 국제도산이었고,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제적 거래를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파산기업의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에 앞서, 채무자 및 파산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파산의 규모보다 더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U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도산규정(EU Insolvency Regulation)’을 현대화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12월 도산규정을 개정하였다.³⁵⁾

도산규정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변화된 정치환경과 경제환경, 도산규정의 사용증가, 채무자 보호, 특정고려 지역에 관한

34)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Ibid*, p.4.

35)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vision of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p.2.

사항, 도산규정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한 논의가 EU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³⁶⁾ 특히, 2008년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를 직면하여, 유럽 이사회는(European Council)는 금융통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경제성장은 EU 집행위원회의 정의에 관한 핵심 아젠다에 해당하며,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는 파산절차에 관한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이하 ‘도산규정’이라 함)의 개정이었다.³⁷⁾

도산규정의 개정작업은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Article 81(2)(a), (c) 및 (f)에 근거하였으며,³⁸⁾ 통상의 입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³⁹⁾ 도산규정의 개정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12 Work Programme’에 Regulation 46의 검토를 비롯하여 Regulation의 개정 업무를 포함시켰으며, 개정작업은 Europe 2020, the Small Business Act, the Annual Growth Survey 2012 및 Single Market Act II 와 관련이 있다.

한편, 2011년 10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도산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파산 관련 법률과 회사법의 조화를 권고하는 resolution 을 채택하였다.⁴⁰⁾ 이 개정은 규정의 조항검토를 비롯한 개정신청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채택될 예정이다.⁴¹⁾

36) Clifford Chance LLP, “European Insolvency Procedures 2012 Edition”, 2012. 9, p.5.

37) Ir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formal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s Meeting”, 2013. 1. 18, p.1.

3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8:115:0047:0199:en:PDF>

39) EU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국제도산규칙의 발전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40)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reference=A7-2011-0355&language=EN#title1>

4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2.

2. 규정의 의미

도산규정은 EU에서의 국제도산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관할, 파산관련 결정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적용법률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절차에서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산규정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내에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주된 도산절차(main proceedings)의 개시와 관련된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re of main interest: COMI)⁴²⁾의 법원이 갖도록 하고 있다.

도산절차에 관련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률이며, 특히 준거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순위와 절차적 권리가 결정된다.

II. 2012년 개정 도산규정의 주요내용

1. 정책 목적

EU 도산규정은 정책적으로 일반목적과 특별목적, 운영상 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1> 도산규정의 정책목적 구분

일반 목적
- 경제위기에서 내부시장의 기능성과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도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적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

42) “주된 이익의 중심지, centre of main interest, COMI”는 국제도산절차 진행시 관할 결정 기준.

<p>특별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을 구제하고 투자를 보호하고 실업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정직한 기업가와 과채무상태의 소비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자국 내 도산관련 절차를 범 EU의 승인을 보장 - 채권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거래와 투자 장려 -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 도산 감독의 효율성을 증대 - 다국적 기업집단의 구성원의 도산의 효율적인 감독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구제를 용이하게 함
<p>운영상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청산절차의 비약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도산규정의 적용범위문제를 언급 - 국내 도산법의 발전을 채택하고 구조조정, 사전조정(pre-insolvency)절차 및 현재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를 벗어난 절차(하이브리드 절차)를 포괄하는 부차적인 절차를 허용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 - 기업 및 자연인이 적법하게 설립 및 이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편견 없는 도산절차개시에 관한 관할지 규칙을 명확화 - 관할지 결정 및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체계를 개선 - 절차 이전과 절차 중에 있어서 법원과 실무자들간에 조정을 개선하고, 각 회원국에서 모든 관련 결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특히 SMEs에 대하여 청구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사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을 개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7-8.

2. 적용범위와 주요개념

도산규정은 채무자 및 파산집행인이 선임되어, 부분 또는 전체 매각을 하는 집단 파산 절차에 적용되며(§1.1), 보험 계약, 신용 기관, 타사

자금 또는 증권의 보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계약 또는 집합 투자 계약에 관한 파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1.2).

도산규정 제2조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위에서 언급된 집단 소송을 의미하며, 이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적용되며, ‘절차가 개시된 상태’인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게 된다(§4.1).

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에서 그 절차의 개시, 종료의 조건과 당사자의 행위조건을 결정하게 된다(§4.2).

3. 개정 된 도산규정의 특징

개정된 도산규정의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사항을 국가별 파산법으로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직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채무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⁴³⁾

둘째, 법적 확실성이다. 채무자(COMI)의 재판관할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명확화 된 규정은 “법정 쇼핑”⁴⁴⁾을 통한 사기행위를 기소하거나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3) Viviane REDING, “Modern Insolvency Rules : lending a helping hand to businesses in distress”, European Commission, 2013. 5. 16, p. 4.

44)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가 또는 주(州)(법역)의 재판소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 이와 같은 선택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최대의 요인은 법역(法域)에 따라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첫째로 각 법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준거법)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사법(저촉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제사법의 통일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곤란하다. 둘째로, 각 법역에 따라 사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법규(실질법) 자체의 내용이 다른 것도 원고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지만 사법의 국제적 통일도 또한 곤란한 문제이다. 한국사전연구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참조.

셋째, 개정된 규정은 파산집행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주된 절차 및 보조 절차에서 파산집행인 사이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부실기업(그룹)에 대한 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부실한 그룹은 더 나은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개정된 규정은 이를 위하여 그룹부실의 조정을 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파산집행인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실그룹의 파산집행인은 조정과정에서 넓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파산집행인은 전체 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협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규정의 다섯 번째 특징은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부실기업 등록은 절차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 사법 포털을 통하여 부실기업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게 하였다.⁴⁶⁾

4. 세부적용 내용

(1) 구 분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① 현상유지, ② 채권자와 채무자간 그리고 보편성과 지역성 간의 현재의 균형을 유지면서 기존 규정을 보완(선택 A), ③ 규정의 기본 전제를 변경하고 자국 내 도산법률과 절차의 유사성 또는 수용을 요구(선택 B)하는 3가지 정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 왔다.

아래 표에서는 이러한 선택들을 구성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의 확장을

45) Viviane REDING, “Modern Insolvency Rules : lending a helping hand to businesses in distress”, European Commission, 2013. 5. 16, p. 4.

46) Viviane REDING, *Ibid*, p. 5.

의미하는 선택 A와 B에 있어 ① 적용범위의 확장, ② 회원국의 결정을 국내 전자등록부에 공시, ③ 청구제기를 하기 위한 절차 및 규격화된 유형의 도입은 공통된 내용에 해당한다.

<표 - 2> 도산규정 세부구분

문 제	현 행	선택A	선택B	
도산규정의 제한된 적용범위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와 정의가 사전조정 제도, 하이브리드 절차 및 개인도산절차를 포괄하지 않음	Regulation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 절차는 청산절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 미비	도산실무가를 임명하고 일반적인 협력 구조를 통하여 주된 절차와 선택A 절차 간의 조화를 모색	모든 주된 절차에 대한 단일 법원의 권한 부여: 기업집단내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단일한 도산감독인을 선임	
도산규정의 이행과정에서의 곤란	공시의무의 없고, 모든 회원이 전자적 도산 등록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회원국들에게 국내 전자등록부에 도산절차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공시하도록 하고, e-justice portal에 국내등록부에 링크할 수 있는 공통된 카테고리를 지정함		
	청구체계의 통일된 유형 마련 미비 절차는 전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처리됨	청구제기와 관련하여서는 EU수준으로 절차와 규격화된 유형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에게 청구제기와 관련된 전자적 수단을 설정하도록 장려함		
	관례법에 의하면 관할의 결정은 COMI에 달려있음	Regulation과 관련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관사들을 연수	국내도산법률들의 요건들을 조화시킴	
	조정과 관련하여 실	부차적인 절차를 유	부수적 절차 폐지	

문 제	현 행	선택A	선택B
	무가들간에만 제한되어 있음	지하지만, 부수적 절차 전에 또는 중에 주된 절차와 조화를 개선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9.

(2) 선택 A의 주요내용

EU 도산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선택 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도산규정의 적용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를 벗어난 절차를 하이브리드 절차라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절차, 사전조정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포함하도록 도산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 절차가 청산절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배제하였다.⁴⁷⁾

둘째, 파산집행인(Insolvency Practitioner)⁴⁸⁾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한 포괄적인 협력구조를 마련하고, 주 절차간의 조화를 꾀하였다. 선택 A에서는 도산규정에서의 법인별 접근법을 고수하지만, 동일한 기업집단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조화를 마련한 것이다.⁴⁹⁾ 특히, 회생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47) 하이브리드 절차와 사전조정절차에 관한 개요는 Section 2 of the Commission report of 12.12.2012 on the evalu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참조.

48) 파산집행인이란 회계사, 변호사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파산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자격을 주는 것으로, 파산집행인을 ‘의사’라는 의미가 포함된 ‘Practitioner’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금융문제에서 비롯된 신용불량문제가 신체에 생기는 질병과도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4. 4. 6. 문화일보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0065374>)

49)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은 ① 다른 주 절차에 대한 파산집행인은 기업집단내의 도산기업들에 대한 회생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교류와 협력을

법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도적인 파산집행인 부속기업의 청산절차의 증지를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파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면, 회원국에게 파산절차의 개시와 종료결정 및 자국 내 전자등록부 파산절차 중의 다른 결정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고, e-justice portal에 자국 등록부와 링크되는 공통된 카테고리 설정한다. 이로 인해 회원국은 법인과 자연인의 파산결정과 관련하여 전자등록부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파산절차에 관하여 접근가능하고 포괄적인 EU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e-justice portal에 국내 등록부를 링크할 수 있는 공통된 카테고리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채권자, 이해관계자, 고용인 및 법원은 도산절차가 다른 회원국에서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선택 A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국제 도산절차에서 청구하는데 필요한 EU내의 모든 언어로 통일된 유형(표준양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채무자의 고의성 확인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였는데, 도산규정에 따르면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권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주 절차 또는 부수적 절차의 선택에 관한 사항을 개시결정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COMI는 최근 이전되었지만 채무는 기존 회원국에 남아있는 경우, 법원은 먼저 채무면제 선언 전에 COMI 이전에 대한 진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외 채권자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채권자에게 도산절차의 개시결정에 대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주 절차 및 부수적 절차의 파산집행인들간의 조화를 위한 현행체제에서 규정되었다. ② 예컨대 동일한 파산집행인을 선임함으로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Regulation에 따라, 서로 다른 주 절차에 능숙한 법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기업집단 내 하나의 구성기업에 대한 주 절차에서 파산집행인은, 다른 구성기업에 관한 절차에 능숙한 법원과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해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제소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판사들에게 COMI에 관한 판례법과 도산규정에 대한 연수가 요구된다.

(2) 선택 B의 주요내용

선택 B에서는 국내 파산법과의 조화를 설명하였는데, 국내 파산법의 요소들을 조화하는 특히 채무면제기간, 절차개시의 조건과 규칙, 채무자들에 대한 공청회(hearing) 규칙 및 효과적인 구제절차와 같이 국내 도산절차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기업집단의 도산절차 진행을 위해 감독인을 선임하여 단일 법원에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기업집단의 단일한 주절차를 통하여 부수적인 절차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Ⅲ. 도산규정에 대한 평가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산(bankruptcy)의 수와 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는 개선안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도산규정은 EU내의 국제도산절차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그 평가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⁵⁰⁾

우선, 도산규정은 일반적으로 국제파산 절차를 촉진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기존의 도산규정은 사전 부실 단계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국가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규제 대신에 기존 관리(이른바 “하이브리드 절차”)를 절

50)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3.

차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은 최근에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 조정 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파산절차의 이러한 유형을 도입했다.

또한, EU에서 개인 파산 사례의 40%가 현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EU와 같은 단일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보조절차는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영역으로 꼽힌다. 다른 회원 국가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700기업이 매년 파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수백 개의 보조 절차가 매년 개시된다. 보조절차의 개시는 채무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방해하고 추가 비용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⁵¹⁾

이와 같이 도산규정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① 기업의 구제 및 기업가들과 면책된 자연인들의 이동(이주)의 자유에 대한 논란, ② 파산절차개시에 관한 적정한 관할지 결정에 따른 논란, ③ 국제도산절차의 비효율성, ④ 기업집단의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적 체계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사전조정제도(pre-insolvency schemes)는 자연인의 채무면제절차 및 기업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의 부재와 같은 현행 도산규정의 적용범위에서의 흠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도산규정이 제정된 이후, 다수 회원국도 기업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 자국의 파산법을 개정해 왔다. 또한, 회원국 중 2/3가 도산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전조정(pre-insolvency)절차를 마련하였거나 채무자를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하이브리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회생가능 한 기업을 구제하고 실업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규정들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51) European Commission, “Modern Insolvency Rules: lending a helping hand to businesses in distress, 16 May 2013, p.3.

그러나 아직까지 사전파산절차 또는 하이브리드 파산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회원국에 대해서는 도산규정에서 국내의 사전 파산절차를 포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²⁾

한편, 도산규정에 따르면, 파산절차를 개시한 관할지는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발생지(COMI)의 소재지의 법원이 된다. 부차적인 절차개시가 없다면, COMI 소재지인 회원국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고, 그 국가의 파산법이 적용된다.

도산규정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자신의 COMI를 이전함으로써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기업이나 자연인의 법정쇼핑(forum shopping)을 허용하는 것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모든 COMI이전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정쇼핑의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파산에 관한 국내법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⁵³⁾

5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5.

53) European Commission, *Ibid*, p. 6.

제 3 장 패자부활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서 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 재도전절차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도산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재무 위험에 처한 기업 및 개인의 신속한 회생 및 파산을 위해 기존 도산 관련법을 통합한 법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에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가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기업이 채무자인 경우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업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는다.⁵⁴⁾ 반면, 회생절차는 기업 채무자가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소득을 창출하여 변제에 사용될 재산도 증액시키고, 창업자의 실패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산법」에 따른 회생제도의 근본취지는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⁵⁵⁾ 청산했을 때보다 변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여,⁵⁶⁾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54) 오수근, 앞의 책, 30면.

55)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1219호)’ 제9조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청산가치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실무도 거의 예외 없이 이에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Vol.641), 2010. 2, 106면.

56)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보전처분 등 법원의 조치로 회사재산이 보전되고, 모든 채권자가 채권의 우선순위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부도처

그런데 「도산법」은 회생기업의 종류나,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구성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회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관리인 선임 등 몇 가지 규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에게 예외를 두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일한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회생절차 진행 시 진행의 속도는 해당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즉, 회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자금의 소진, 외부와의 거래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도전을 위하여 법인(기업)대상의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회생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신속한 회생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부실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가계부채의 부실증대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⁵⁷⁾⁵⁸⁾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도전(재창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신속한 유동성자금의 제공이 필수적일 수 있다.

리 되거나 파산선고가 되어 그 회사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것 보다는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나국주,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필요”, NATIONAL ASSEMBLY REVIEW, 2009. 1, 118면.

57) 홍순영, “2012년 국내외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개선방향”, The Banker, 2012. 2, 17면.

58) 이와 같은 중소기업 경기 및 자금사정 전망은 중소기업 현장을 통해 보다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천333개사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중소기업 경기 및 경영환경 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2.3%)이 2011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경기전망 체감도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업황전망지수(SBHI)가 90.9로서 기준치(100) 미만을 기록해 업황의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영, 앞의 글, 18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재창업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EU의 경우와 같이 정리기간의 단축, 재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신규창업자와 동일한 처우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재창업지원제도는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파산의 ‘고의성’ 여부는 지원대상 판단기준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악의적인 파산절차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성 없이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완화(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관련 법상의 규제완화 포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 본 EU의 패자부활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제 2 절 재도전지원 제도의 개선

I. 고의성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운영

기업의 실패 이후 재도전 기회에 관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직한 파산은 법률적으로 구분되기 어렵고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이와 관련하여 EU 각국의 제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의성 없는 정직한 파산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정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를 정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 입법상황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표 - 3> EU 회원국별 채무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른 제도 구분

국 가	사기(고의성)의 경우 별도의 파산절차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패스트 트랙’ 절차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면제절차
벨기에	존재	존재	존재
덴마크	부존재	부존재	불명확/사용불가
핀란드	부존재	존재	존재/부분면제
프랑스	존재	존재	존재
독일	부존재	부존재	존재
그리스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헝가리	존재	부존재	존재
이탈리아	부존재	부존재	존재/전부면제
네덜란드	존재	불명확/사용불가	불명확/사용불가
노르웨이	존재	부존재	불명확/사용불가
스페인	존재	존재	부존재
터키	부존재	존재	존재/부분면제
영국	존재	부존재	부존재

자료 : Business Dynamics Survey 2010 ;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151.

EU 파산규정과 그 적용을 위한 정책적 내용들을 보면,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두고, 재도전의 기회를 갖는데 불필요한 장애

59) European Commission,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p.150.

를 방지하려는 파산과 도산에 대한 접근방법이 선호 안(preferred option)에 설정되어 있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또는 사전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제조업의 도산정도가 3분의 1미만으로 나타난다. 단지 채무자의 4-6%만이 사기적인 의도를 갖고 있고, 사기에 대한 제제는 개선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에게 다른 기업으로의 재도전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직한 행위(dishonest behavior)에 대해 면책을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걱정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 설명되고 있다.⁶⁰⁾

우리나라에서도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회생절차, 지원제도 등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제 ‘고의성’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쉽게 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EU 각 회원국의 입법 상황은 논외로 하고, EU 자체를 보면,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제도운영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안별로 그 ‘고의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으나,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성 없이 파산한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의 적극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II. 재도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

유럽에서는 개인의 과잉채무상태(over-indebtedness) 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회원국에서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

60)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13.

다. 개인파산제도의 도입은 파산과 개인채무의 과잉상태는 기업가 정신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인식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를 통한 채무면제 가능성은 개인의 과잉채무상태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사회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EU 회원국에서는 채무면제를 비롯한 여러 개의 개인파산 절차가 도산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이들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다수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채무자는 여전히 해외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거나 단일 시장(single market)에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정직한 기업가와 채무 면제자에게는 제도전에 대한 제도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EU의 기업가정신 정책과 상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재창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창업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되는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EU의 경우와 같이 정리기간의 단축, 재창업자에 대한 부담한 대우 방지(신규창업자와 동일한 처우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관한 입법은 신규창업과 재창업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용계획에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창업자는 사업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의 요인을 인지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분된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단지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대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신규창업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의 경우와 같이 정리기간의 단축, 재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방지(신규창업자와 동일한 처우 보장)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념화 하거나 기본적인 사항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2의 규정에서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⁶¹⁾ 재창업에 대한 기업가정신 제고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재창업에 대해서는 재창업자 스스로의 경제사회 재진입에 대한 의지를 지원해 나가는 것과 함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사항⁶²⁾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회생제도의 개선

I. 신속회생절차의 운영

1. 신속회생절차 도입의 필요성

EU SBA의 제2원칙인 “신속한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을 통하여 파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법적인 절차를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중

61) 한정미, 앞의 보고서, 71면.

62) 자료 중복제출의 방지, 간소화된 회계시스템의 적용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소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속회생절차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산법」에서 기업이 부실화 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34조 제1항).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회생절차는 소규모 기업이나 채무액의 규모 등의 구분 없이 동일한 신청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대기업이 이용하던 법정관리제도와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가 회생제도로 통합되면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남아있다.⁶³⁾ 예컨대, 기업회생절차는 기업회생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경영을 정상화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회생절차 신청을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회생을 위해 재배치할 인적·물적 자원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회생여부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⁶⁴⁾

또한, 부실 중소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미리 예납금⁶⁵⁾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당장 부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예납비

63) 나국주, 앞의 논문, 119면.

64) 양민호,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 회생컨설팅을 중심으로” 2013년 파산부 워크숍 자료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10면.

65)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으로서, 예납금의 대부분은 기업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된다.

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도산절차 진행에 대한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기업의 효율적인 재건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회생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의 경우 조속히 퇴출시켜 연쇄부도 등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⁶⁾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서 회생채권의 조사,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실권규정, 회생채권의 집행력에 관한 규정, 회생계획의 수행 및 변경에 대한 규정 등 회생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기업에 비해 저렴하게 하는 등의 절차와 비용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다.⁶⁷⁾

2. 실무상 신속회생절차의 도입 및 운영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1년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신속회생절차(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대하여 절차진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대하며,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⁶⁸⁾

신속회생절차의 특징은 인가 후 조기종결(6개월 이내), 관리인불선임, 구조조정임원(CRO)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채권자협의회의 주도적·적극적 참여(구조조정임원 추천, 자문기관 비용의 채무자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66)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중소기업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 25, 141면.

67) 나국주, 앞의 논문, 119면.

68)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효율적 사건관리”, 회생 및 파산사건의 효율적 관리방안 파산부 법관 워크숍 자료집, 2012. 3. 27, 12면.

기존에 기업회생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이 제도 시행 이후 대형기업의 경우 4~7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 되었는데, 신속회생절차가 도입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기간의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⁹⁾

그러나 신속회생절차의 도입 이후 본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채권자들의 관심부족 및 회생회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대규모 기업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⁷⁰⁾ 반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은 여전히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신속회생절차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회생컨설팅의 확대

1. 회생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이 도산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해당 기업의 사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성공가능 한 사업부문에 기업가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성 없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파산·청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재창업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생컨설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중소기업 회생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채권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회생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협력⁷¹⁾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회생에 역량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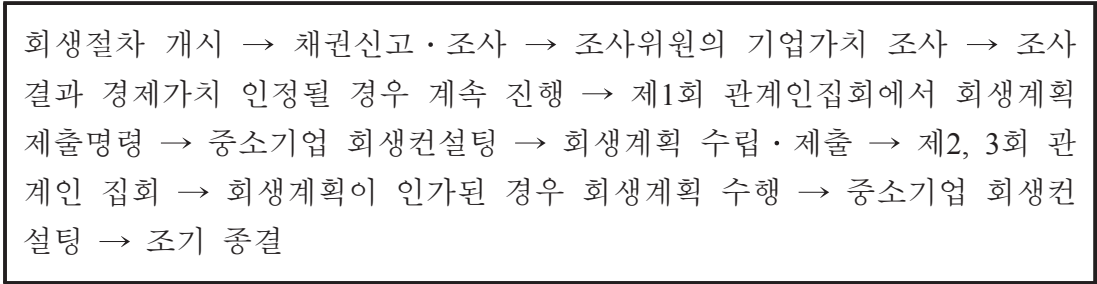
69) 신속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 인가기간의 예를 보면, LIG건설 6개월(2011. 4. 1. 개시, 2011. 9. 30. 인가), 동양건설산업 7개월(2011. 7. 12. 개시, 2012. 2. 21. 인가), 대우자동차판매 4개월(2011. 8. 10. 개시, 2011. 12. 9. 인가), 임광토건 4개월(2011. 11. 24. 개시, 2012. 3. 22. 인가) 등이 있다. 정준영, 위의 자료집, 14면.

70) 양민호, 앞의 자료집, 9면.

71) 채권감면이나 출자전환 후 경영목표달성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주식환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고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⁷²⁾

<그림 - 2> 우리나라의 회생컨설팅이 포함된 중소기업 회생절차



자료 : 정준영, 앞의 자료집, 31면.

2. 우리나라 회생컨설팅 현황

「도산법」에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회생컨설팅을 실제 운영한 사례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공단이 수행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들 수 있다.⁷³⁾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컨설팅의 내용으로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의 지원대상으로는 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⁷⁴⁾에 참여한 업체로 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아래 표 유형①),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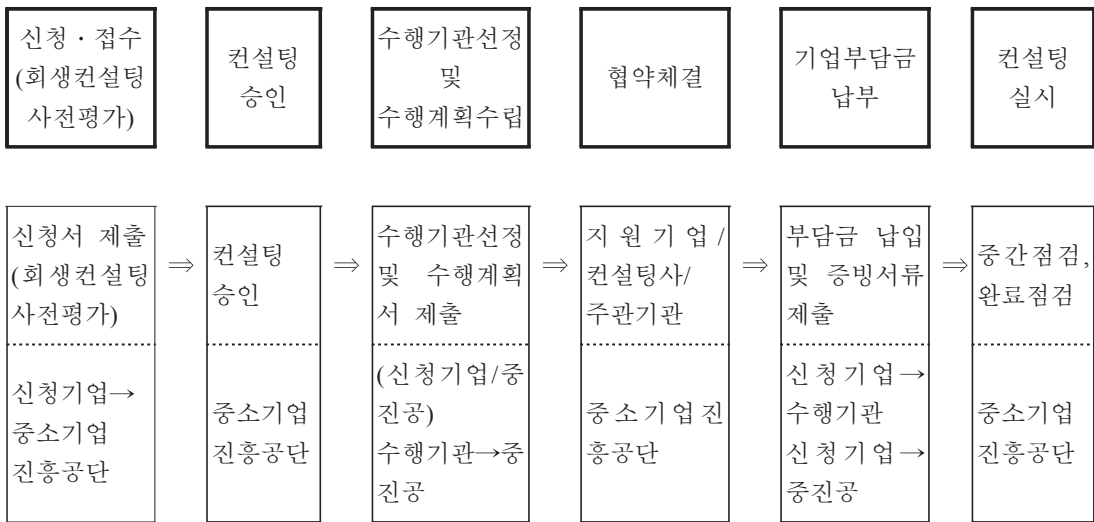
72) 양민호, 앞의 자료집, 11면.

73)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1개 업체 당 1,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회생회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들 기관은 회생계획안 작성업무에 치중하였다.

74)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법원 조사위원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청산·파산 또는 회생 등을 제시해 주는 사업

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⁷⁵⁾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아래 표-4 유형 ②)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현행 회생컨설팅 진행절차의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 3> 회생컨설팅 진행절차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2면.

<표- 4> 기업회생컨설팅의 주요내용

구 분	기업회생컨설팅 유형 ①	기업회생컨설팅 유형 ②
컨설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심문답변서 검토·작성 지원 ▪ 개시결정시 법원참석 ▪ 채권자목록표 작성 지원 ▪ 채권자신고서 취합 지원 ▪ 채권 시부인표 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신청관련 서류 작성 지원 ▪ (필요시)심문답변서 검토·작성 지원 ▪ 개시결정시 법원 참석 ▪ 채권자목록표 작성 지원

75)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구 분	기업회생컨설팅 유형 ①	기업회생컨설팅 유형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결산업무 자문·지원 ▪ 조사업무 대응지원 및 자문 ▪ 관리인 보고서 작성지원 ▪ 1회 집회서류 작성지원 및 참석 ▪ 회생계획안 수립 지원(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 ▪ 협상참여 및 지원 ▪ 2·3회 집회서류 작성지원 및 참석 ▪ 기타 회계세무 및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신고서 취합 지원 ▪ 채권 시부인표 작성 지원 ▪ (필요시)결산업무 자문·지원 ▪ 관리인 보고서 작성 지원 (조사위원 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하되,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대안 제시) ▪ 회생계획안 수립 지원(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 ▪ 협상참여 및 지원 ▪ 1·2·3회 집회서류 작성지원 및 참석 ▪ 기타 회계세무 및 법률자문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7면.

3. 회생컨설팅 제도의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이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회생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생컨설팅 제도의 장점을 인식하고 회생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이 회생컨설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보수 및 컨설팅 비용의 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사위원 보고절차의 생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조사위원은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그리고 회생절차 진행 여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실무상 주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이 된다. 조사위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인 의무규정(법 제81조부터 제83조 제1

항까지 규정된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 의무, 사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도산법」은 제87조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예외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비교적 적으며 사업부문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위원 작성의 보고서 내용도 정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수준의 회생컨설팅이 이루어져 종래 조사위원이 작성하던 보고서 수준의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절차를 생략하여 회생절차를 단축하고, 절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⁷⁶⁾

회생절차 신청 기업이 회생컨설팅을 받을 경우 관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을 검토하여 관리인의 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이 경우 조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자금을 회생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⁷⁾

다만, 이와 같이 회생컨설팅을 통한 관리인 보고서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생략된다면 회생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의 전문성 요건과 컨설팅 내용,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회생컨설팅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별도의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6) 양민호, 앞의 자료집, 22면.

77) 양민호, 위의 자료집, 22면.

EU에서도 도산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구제(rescue)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절차 및 사전조정절차의 주된 목적이고, 그 편익은 효율적으로 절차를 조정함으로써 증가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도모하는데 유용하며, 국제도산의 효율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사법예의 접근(access to justice)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였다.

부차적 절차에서는 주 절차에서 도산관리인(insolvency administrator)의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시키며, 또한 추가적인 도산 실무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비용을 상승시킨다.

기업들이 종속기업을 통해서 국제적 활동을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절차의 이용은 감소되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나 회생절차의 준비에 익숙하지 못하여 신청대리인의 후견적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작업의 조언에 그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법」의 채권자협의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대법원 규칙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비용 및 보수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대법원 규칙 제4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 규정을 개선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채무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이하 규모의 경우 정부가 비용 및 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관리인 제도의 개선

1. 관리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상의 문제

「도산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큰 변화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관리인 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⁷⁸⁾⁷⁹⁾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게 되고(법 제 56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이 된다(법 제74조). 그런데 「도산법」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⁸⁰⁾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⁸¹⁾이 정하는 자인 경우

78) 현행 관리인 제도는 미국식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입 당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경영자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도산절차에 진입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찬성론과 관리인을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지 않으면 기존 경영진의 경영책임이 은폐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론 등이 있었다. 이에 관한 상세는 최두열, “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찰”, 기업소송연구, 2007, 3, 399면 ; 김재형, “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미국의 DIP제도의 수용문제)”, BFL 제9호, 2005. 1, 27면 참조.

79) 일본에서도 「민사재생법」 제3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경우 종전의 대표자에게 경영을 계속하게 하는 DIP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갱생법」에서는 종전의 대표자에게 경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 담보권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입하지 않고 있다(회사갱생법 제67조 제3항, 제70조 제1항).

80) 관리인을 불선임하는 것은 향후 언제든지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일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으로써 대표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대표자가 주주들의 신임을 얻을 경우 계속하여 경영을 할 수도 있다.

8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합자회사,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서 규정된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서 규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③ 회생절차개시 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④ 회생절차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

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74조 제3항).⁸²⁾

2006년에 「도산법」에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자 협의회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때에는 채권자협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법 제20조 제1항), 사실상 법원의 감독만을 받게 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규정된 이유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나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회생 절차 진입에 대한 심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더 많은 부실기업들로 하여금 더 빨리 이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이다.⁸³⁾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경영자가 가진 노하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인간관계 등을 바탕으로 영업을 한 경우가 많고, 핵심적인 소수의 기술 인력에 의존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제3자가 관리인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에 애착을 가지고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⁴⁾

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 ⑥ 회생 절차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⑦ 그 밖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로 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 163건 중 개시결정 된 사건은 115건인데 그 중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75건, 기존 대표자 관리인 선임결정은 24건, 제3자 관리인 선임결정은 13건, 공동관리인 선임결정은 3건이었다. 즉, 관리인 불선임과 기존대표자 관리인선임 등 DIP 형태는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채규모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동 시기에 접수된 91건의 회생사건 중 58건이 관리인 불선임으로 진행되었다. 정준영, 앞의 자료집, 17면.

83) 유해용,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33면.

84) 2005년 3월 31일의 「도산법」 제정이유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존 경영자 관리

그러나 이와 같은 고려에 따라 도입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는 회사 경영자가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과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주주를 늘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경우가 자주 발견되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올바른 적용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⁸⁵⁾ 또한, 기업회생 제도는 경영의 효율성 이외에 공익적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⁸⁶⁾

또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개인재산을 출연하거나 개인의 연고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긴급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존속가치가 없는 기업(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남게 되어 중소기업 내의 자금 집행에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게 된다.

2. 관리인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불선임결정(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을 통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입

인 제도의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

85) 유해용, 위의 논문, 51면.

86) 송호신·윤창술,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 111면.

및 운영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임과 법원의 감독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게 별도의 관리인 선임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표자가 회생계획 이행에 소홀함이 있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자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 때에는 바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관리인 해임사유는 ①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없는 사유(법 제74조 제2항 제1호)가 발견된 때, ②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③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④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법 제83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실무준칙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기준’에 따르면 ① 관리인에게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③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④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만으로 대표자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해임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업무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영성과를 회생계획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대표자의 경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지 여부에 따라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표자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조기에 시장에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의 개선

EU에서는 매년 현행 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파산의 수가 대략 20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다.⁸⁷⁾ 도산규정에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 주장에는 법관, 파산실무가 및 학계의 지지가 있다. 다만, 일부 응답자 중에는 소비자는 적용범위 확장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매년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약 700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부차적인 절차들이 개시되고 있다. 부차적인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주된 절차와 부수적 절차간의 조정의 여지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도산규정에 따르면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s)에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무가 연합은 국제도산에서의 협력과 정보교환에 관한 다수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도산실무가와 법원은 실무적으로 협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언어장벽 및 정보공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내 절차에 관한 규칙이 협력이 곤란한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 진행함에 있어서 그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과 사업자의 구분이 불분명함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EU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도산법」에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과 개인의 구분만 있을 뿐, 법인인 기업의 유형이나 부채의 규모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8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p. 5.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일반 회생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규모에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상별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것에 반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경우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중소기업의 범위라 할지라도 규모의 차이나 자본금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과 대표자의 자산구분이 희박하고, 대표자의 영업력과 신용도에 따라 기업의 회생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법인)과 기업의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⁸⁾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며,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도 단기간이고, 채권자들의 의결정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기업의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88) 중소기업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에도 이와 같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6000768&md=20130329004746_AS\(2013. 3. 26. 기사 참조\)](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6000768&md=20130329004746_AS(2013. 3. 26. 기사 참조))

따라서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요건인 채무액수의 제한요건 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②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에 해당할 경우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따르도록 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회생절차가 중지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⁹⁾

89)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3. 3. 27. 참조.

제 4 장 결 론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폐업이 기업가정신과 기업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가들은 시장퇴출 후에도 여전히 기업가적 직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학습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업가들은 신규사업자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적고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EU에서 고의적 파산은 4~6% 정도 존재할 뿐이지만, 사회적으로 사업실패의 원인으로 고의로 파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고의성 없는 채무자들은 파산 후에 접하는 낙인과 곤경 또는 차별로 인해 재도전의 의욕이 꺾이게 된다. 또한 사업실패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수의 잠재적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등 사업실패의 두려움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역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파산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며, 일자리 창출·유지의 측면에서도 창업이후 파산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산 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책은 기업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가장 유망한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13년 우리나라의 신정부 수립 이후에도 재도전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재도전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같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도전지원 정책(effective seconde chance policy)을 통해 사업에 실패할 지라도 실패한 기업가가 영원히 실패한 기업가로 폐업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파산에 관한 입법에서는 충돌하는 두 가지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하나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자립가능 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기업가들의 연합(pool)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이전될 수 없는 특유의 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기업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회생절차 도입 등 여러 가지 「도산법」 관련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그간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인효과, 제도나 관행상의 차별적 취급, 회생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기존 경영자가 기업활동, 특히 자금집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점, 채무자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모두 법정절차를 통한 기업의 재건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서 회생절차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⁹⁰⁾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평성이 장점이지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⁹¹⁾ 최근에는 법원이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신속회생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유동성자금의 제공의 개선에도 정부당국, 법원, 금융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⁹²⁾

90) 유해용, 앞의 논문, 128면.

91) 임치용, 「파산법 연구3」, 박영사, 2010, 17면.

92) 한정미, “중소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창조경제와 창업·기술혁신 규제개선」 자료집, 2013. 7. 24, 92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실패한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도전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재도전·재창업의 성공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없도록 한다면,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따르게 되고, 회생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여 종결하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⁹³⁾ 이제 개인의 한탄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 불가능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고려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93)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28면.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중소기업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2008. 1. 25.
- 김재형, “관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미국의 DIP제도의 수용문제)”, BFL 제9호, 2005. 1.
- 나국주,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필요”, NATIONAL ASSEMBLY REVIEW, 2009. 1.
- 송호신·윤창술,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
- 양민호,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 회생컨설팅을 중심으로” 2013년 파산부 워크숍 자료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Vol.641), 2010. 2.
- _____,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 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 임치용, 「파산법 연구3」, 박영사, 2010.
-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효율적 사건관리”, 회생 및 파산사건의 효율적 관리방안 파산부 법관 워크숍 자료집, 2012. 3. 27.
- 최두열, “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찰”, 기업소송연구, 2007, 3.

참 고 문 헌

- 한국사전연구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 1. 5.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 한정미,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7. 31.
- _____, “중소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3. 7. 24.
- 홍순영, “2012년 국내외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개선방향”, The Banker, 2012. 2.
- Koide Atsushi,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경영자의 보증”,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공동학술대회, 2013. 10. 18.

□ 외국자료

- Catherine Bridge, “Insolvency-a second chance?”, Law in transition 2013.
- Clifford Chance LLP, “European Insolvency Procedures 2012 Edition”, 2012. 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ink Small First”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5.6.2008 COM(2008) 394 final.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2012. 12. 12.

_____, “Towards a new European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2012. 12. 12.

_____,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vision of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_____, “Business Dynamics : Start-ups, business transfers and bankruptcy”, 2011. 1.

_____, “Modern Insolvency Rules: lending a helping hand to businesses in distress, 16 May 2013.

European Commission Enterprise and Industry, “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2011. 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Small Business Act, 10306/09(Press 155) - Press Release, 2945th Council meeting, Competitiveness, COM, 2009.

Irish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nformal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s Meeting”, 2013. 1. 18.

Linda Senden, Soft Law in European Community Law, 2004.

OECD, “Bankruptcy and second chance for SMEs(Dimension 2)”, 2012.

Viviane REDING, “Modern Insolvency Rules : lending a helping hand to businesses in distress”, European Commission, 2013. 5. 16.

□ 인터넷 자료

<http://www.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1.php>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intm/122326.pdf.

<http://www.eea.europa.eu/about-us>

<http://dx.doi.org/10.1787/9789264178847-en>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8:115:0047:0199:en:PDF>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reference=A7-2011-0355&language=EN#title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006537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6000768&md=20130329004746_AS